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05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 박형수 · 엄태영 · 구자근

조정훈 • 강선영 • 정점식

이종배 · 안철수 · 김 건

인요한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왜곡하게 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또한,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으로 인해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소수자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나,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시할 경우 농촌 지역 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전국적 중선거구제 도입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이외의지역에서는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18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選出할 國會議員의 定數는 1人으로 한다"를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2명 이상 4명 이하
- 2. 1호 이외의 지역은 1명

제150조제7항 전단 중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말한다)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88조의 제목 "(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를 "(1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에서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國會議員地域區"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해당 국회의원지역구(1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8조의2(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국회의원지역구에서의 지역 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국회의원지역구(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 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후보자를 당선인으 로 결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에 해당하는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국회의원지역구에서의 지역구국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1人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본다.

제19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말한다) 또는 지역구자치구

·시·군의원선거"로, "地方議會議員定數"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또는 지방의회의원정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생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2)-----(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 다)에서 選出할 國會議員의 定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 數는 1人으로 한다. 수는 다음과 같다. <신 설> 1.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2명 이상 4명 이하 <신 설> 2. 1호 이외의 지역은 1명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 者의 掲載順位 등) ① ~ ⑥ 者의 掲載順位 등)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⑦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21조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 제2항제1호에 따라 2명 이상 4 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 명 이하를 선출하는 선거구에 서 실시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 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 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 거를 말한다) 및 지역구자치구 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시·군의원선거-----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한다. ⑧ ~ ⑩ (생 략)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 第188條(1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決定・公告・통지) ①地域區國 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國會議 | 員地域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 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 人으로 決定한다.

② ~ ⑦ (생 략) <신 설>

⑧ ~ ⑩ (현행과 같음)

에서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 | 의 결정・공고・통지) ①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 회의원선거의 해당 국회의원지 역구(1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 지역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8조의2(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 정・공고・통지) ① 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 원선거의 국회의원지역구(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국 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유효투표 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해 당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에 해 당하는 순위의 사람이 2명 이

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 자가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 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 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 국회 의원지역구에서 선거할 의원정 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 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 로 결정한다.
-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 3항부터 제6항까지는 국회의원 지역구에서의 지역구국회의원 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1 人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 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본다.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생략)

第195條(再選擧) ①다음 各號의 1 | 第195條(再選擧) ①------

- 1. (현행과 같음)
- 2. 當選人이 없거나 지역구자치 2. -----지역구국회

當選人이 당해 選擧區에서 選 擧할 地方議會議員定數에 달 하지 아니한 때

3. ~ 6. (생략) ② (생략)

<u>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의원선거(제21조제2항제1호에</u> 따라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 출하는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말한 다) 또는 지역구자치구·시· 군의원선거--------지역구국회의원정수 또 는 지방의회의원정수----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